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(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)을 따르며,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다만,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.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
------	--------	------------
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 반
가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1호	100	150	200
나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2호	100	150	200
다.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3호	100	150	200
라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4호	100	150	200
마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5호	100	150	200
바.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5호	100	150	200
사.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 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1항	500	750	1000
아.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5호	100	150	200
자.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6호	100	150	200
차.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광산안전도를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7호	100	150	200
카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8호	100	150	200